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 방법서 별지)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월납)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으로 가입된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에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월납	7년납	0세~80세	(가입나이+10세)~90세
월납	10년납	0세~79세	(가입나이+11세)~90세
월납	15년납	0세~74세	(가입나이+16세)~90세
월납	20년납	0세~69세	(가입나이+21세)~9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를 최저한도로 한다.

※ 납입기간 별 최소거치기간(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 기간
7년납	3년
10년납이상	1년

·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 등으로 납입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납입기간을 따른다.

다.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주기
무배당 세이프초이스 연금보험(월납)	월 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된다.

가. 기본보험료

: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최저한도
7년납	50만원
10년납 이상	30만원

나. 추가납입보험료

1)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2)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원이며, 1만원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4)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①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 납입한도는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이다.

③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의 200%이다. 가입 후 경과년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② 및 ③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20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는 상기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월납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납입기간(연) X 200%
	연간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200%
	1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 때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 미경과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이 선납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나. '가'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체하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다. 이 경우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부분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하며, 「5.나.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7.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한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5.나.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하는 납입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 × 2.0%

㈜ 기본보험료의 선납이 있는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상기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연금지급 개시 이전 보험기간이면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다만,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인출수수료 포함)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용

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9.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다. 월납의 경우, ‘가’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의 600% 이상으로 한다.

11.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계약자적립액 인출의 일환으로 다음에 정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①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② 신청시점이 「연금지급 개시일 - 2년」이전인 경우

나. 계약자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부터 보험계

약이 유지되는 동안 '다 '항에 따라 인출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자동지급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가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생활자금인출 주기를 매월, 3개월, 6개월 또는 매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다. 생활자금인출금액은 생활자금 지급시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지급시점 이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각 지급시점 이전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자금인출서비스는 중지된다.

① 계약자가 생활자금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②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의해 생활자금이 자동지급되는 동안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신청한 경우

③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④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

⑤ 생활자금인출금액이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⑥ 생활자금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600% 이하가 되는 경우

마. 생활자금인출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부족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바. 은행계좌 등 계약자 정보변경으로 생활자금인출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해당일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생활자금인출금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되지 않는다. 이후 지급이 가능하게 된 때,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생활자금인출금액에 그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과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공시이율은 변경될 수 있다.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해당 월의 공시이율로 계산된다. 회사는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x α + 운용자산이익률 x (1 - α)

⑴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①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frac{A/B+C}{A+C}$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수입

②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③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④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⑤「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

⑵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① 객관적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②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④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고채 가중치(β1) = $\frac{a}{a+b+c+d}$

회사채 가중치(β2) = $\frac{b}{a+b+c+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frac{c}{a+b+c+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⑶ 운용자산이익률

①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②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 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③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⑷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다.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연복리 1.0%, 5년초과 연복리 0.7%로 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관련 회사내부지침을 따른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며, 보험계약대출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함)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7년납	보험계약일부터 4년이 지난 후
10년납이상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후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바’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한다. 또한, 총 “납입일시중지”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바’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

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바’에서 정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

사. ‘나’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인하여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다음의 최소 거치기간보다 적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도 “(가입나이 + 연장된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로 자동연장된다.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 거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 기간
7년납	3년
10년납이상	1년

아. ‘사’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회사가 허용한 최대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에도 불구하고,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

15. 노후행복자금에 관한 사항

가. 노후행복자금이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비율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선택된 계약자적립액은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운용된다.

나.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노후행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범위 내에서 5% 단위로 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변경할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선택비율을 5% 단위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과 각 연금지급형태 별 선택비율의 총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한다.

라.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은 노후행복자금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에서 인

출금액을 차감한다.

마.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일부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바.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및 '11. 생활자금인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의 인출 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6. 기타

가.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및 보험종목의 명칭 앞뒤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은행 등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포함)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부가 가능한 특약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①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한다.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④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한다.

⑤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⑥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다.

(2)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적용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을 통하여 전환해준다.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환 가능한 계약의 조건은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따른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무배당 종신전환특약」의 기초서류에 명시된 유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전환이 가능하다.

마.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저축성보험 신규가입과 추가납입제도의 비교 설명내용을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라 안내자료에 기재하여 운영한다.

바.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된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 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2)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3)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